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 등 보호 대책 마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277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 등 보호	3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27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25.

(3) 회 부 일 : 2025.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

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폭행 등 보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u><신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3조¹⁾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²⁾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2024년 기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총계	시도	시·군·구					
			계	본청	읍·면·동			
					소계	읍	면	동
복지공무원	45,532	2,445	43,087	19,145	23,942	1,967	5,553	16,422
사회복지직	32,790	883	31,907	13,552	18,355	1,551	3,879	12,925
행정직 등	12,742	1,562	11,180	5,593	5,587	416	1,674	3,497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통계))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2022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언 등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86.5%, 성희롱과 신체적 폭력은 각각 31.8%, 14.9%의 비율로 나타났다.

< 시군구 본청·읍면동 사회복지 업무팀별 폭력 경험 >

(단위: 개, %)

구분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폭력
미경험	472 (13.5)	2,391 (68.2)	2,983 (85.1)
경험	3,033 (86.5)	1,114 (31.8)	522 (14.9)

* (출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22, 보사연)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 구입 및 통신비 지원, 트라우마 치유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³⁾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특정한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7.12., 2022.1.11.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하 각 목 생략)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 또는 폭행,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비율이 70.7%에 이른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 또는 폭행 등의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행정직, 간호직 등의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유무 >

(Base: 전체 응답자, n=4,210)

폭력 유형 구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났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적 폭력	1,510	35.9	1,466	34.8	44	1.0
언어적 폭력	2,539	60.1	2,382	56.6	148	3.5
정서적 폭력	1,817	43.2	1,800	42.8	17	0.4
성적 폭력	969	23.0	960	22.8	9	0.2
경제적 폭력	1,110	26.4	1,065	25.3	45	1.1
의료적 위험	1,256	29.8	1,241	29.5	15	0.4
정보적 위험	1,354	32.2	1,310	31.1	44	1.0
폭력경험	2,987	70.7	2,670	63.4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77)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7) >

현 행	민형배의원안
<신 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생략)	제5조의2(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사등”이라 한다)을 폭언 또는 폭행,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3(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 한편,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동 개정안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게 될 것이므로, 보호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폭력 보호 규정 마련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다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 보호 규정 마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동 개정안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행정직, 간호직 등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